#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5. 10. 20.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0월 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1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설위원회(2015.10.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 가. 제안이유

○ 2015. 5. 18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 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하향 조 정되어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 나. 주요내용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개정 (안 제8조)
- 재산압류 강행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안 제18조)
- 체납처분의 집행 중지를 공고하는 경우 일간신문 공보 등에 "10일간 공고"에서 "1개월

간 공고"로 변경(안 제39조)

○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에 따른 조례 신설 (안 제5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기영)

본 개정 조례안은 2015.5.18.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 령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세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¹)에서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여 법령 적용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법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안 제18조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제2호²)에서는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받거나, 강제집행, 경매, 법인 해산 시에는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있으며, 납세자가 변경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압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무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바,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체납 지방

<sup>1)</sup> 제7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up>2)</sup>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sup>1.</sup>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 세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sup>2.</sup>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세를 좀 더 원활하게 징수하려는 것임.

- 안 제39조는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의 공고기간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공고기간을 10일로 하였으나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³)에 따라 1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53조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0조<sup>4</sup>)의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신설 하려는 것이며, 명단공개 기준이 2016.1.1.부터 현행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영등포구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17명에서 509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명, 백만원)

현	행	2016.1.1. 시행	
3천만위	3천만원 이상		원 이상
대상자	금 액	대상자	금 액
17	8,510	509	16,737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간접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체납징수 조치들이 함께 병행되도록 하는 등집행부의 고액·상습체납액의 징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망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sup>3)</sup>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 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sup>4)</sup>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4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86 호 제출연월일 : 2015.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2015. 5. 18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 중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 및 신설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령에 맞는 조문 정비 및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법령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고액 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 및 신설 (안 제48조, 제53조)
- 나. 체납 처분의 집행 중지를 공고하는 경우 일간신문 공보 등에 "10일간 공고"에서 "1개월간 공고"로 변경(안 제39조)
-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경우 상위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안 제8조)
- 라.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맞추어 조례 정비(안 제9조제2항, 제10조)
- 마. 조문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안 제18조)
- 바. 상위법령의 위임에서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 삭제 (안 제2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9~31조)
- 사·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부합하게 정비 (안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7조, 제4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40조제2항,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사항

(1) 규제심사 : 심사실시(대상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 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 8. 27 ~ 9. 16,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전"을 "기한 만료일 3일전"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구청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통우편 송달부)"를 "(일반우편 송달부)"로 하고, 제10조 전단 중 "보통우편"을 각각 "일반우편"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납기 전 징수와 압류)"를 "(독촉절차 생략)"으로 하고, 제18조 중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를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영 제67조 및 제68조"를 "법 제80조 및 조례 제21조"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국채 · 지방채, 사채의 등록확인증

제25조제1항제6호 중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을 "등기완료 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단서 중 "자력"을 "재산적 능력"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중 "유보하여야 한다"를 "보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공매처분유보기간"을 "공매처분 보류기한"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 간"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을 "전 1년 내에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서로 짜고한 거짓계약"으로 한다.

제48조 중 "제141조"를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

②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정의)
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우편"이란 「우편법 시행령」 및	<u>〈삭 제〉</u>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통우	
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	
함한다)을 말한다.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	제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
장) ① 납세자가 법 <u>제26</u> 조에 따라	장) ① <u>제26조제1항</u>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u>기</u>	<u>기한</u>
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구청	만료일 3일전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단, 구청장은</u>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
	일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
	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생 략)	제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
	<u></u> 으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	2
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	
는 구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	일반우편
<u>통우편</u>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제10조(일반우편 송달부)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법 제30조제6 항에 따른 <u>보통우편</u> 송달부는 규칙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 한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 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구세를 완납 하지 <u>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u> 다.

제19조(구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구세환급금 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 ② (생략)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처리) ① 세무 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 등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생략)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 담보의 제공을 요구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

			일	Ļ	<u> </u>  }	우		펅
								<u> </u>
제	18조 <u>(독촉절차</u>						생	략)
	아니한 경우에는	<del>-</del> ス	H산을	2 (	갑류	한디	<u>ŀ</u> .	
				_				
저	19조(구세환급	금의	기충'	당	등)			
	<u>〈삭 제〉</u>							
	<ul><li>② (현행과 같음</li></ul>	-)						
제	[22조(징수유예		등의		처	리)		(1)
								제
	2		1				·	조
	•							
	② (현행과 같음	-)						
	<u>〈삭 제〉</u>							

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 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 우
-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 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 로 구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 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 야 한다.
  -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렁증
  - 2. 국채 · 지방채의 등록필증서
  - 3. ~ 5. (생략)
  -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 、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 에는 저당권 설정을 마친 <u>등기필증 또</u> 는 등록필증
  - ② (생 략)
-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② 지 (생 략)
  -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1
	•	
1	공탁영수	<u> </u>
2. 국채 \ 지방채, 사치	내의 등록	확인증
3. ~ 5. (현행과 같음	음)	
6		
		1
<u>등기완료</u> 로하이즈	<u>통지서</u>	<u> 또는 능</u>
<u>록확인증</u>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1) \cdot (2)$
(현행과 같음)	H 11 /	9 9
3		

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u>자력</u>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해 서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 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 여야 한다.

제30조(질문ㆍ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 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 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u>재산</u> ?	<u>덕</u>
<u> 능력</u>		
·		

〈삭 제〉

<u>〈삭 제〉</u>

-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 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 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 `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 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동주 민센터의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 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 켜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제37조(공매처분유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 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 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 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하다.

③ (생략)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② (생략)

〈삭 제〉

<u>보류할 수 있다</u> .
② <u>공매처분 보류기한</u>
③ (현행과 같음)

(1)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③ -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게재하거나 구청、동주민센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생략)
  -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신 설〉

1개월 간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 (현
행과 같음)
②
<u>전 1년</u> 내에 영 제87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과 임대차계약, 전
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
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
을 한 경우에는 서로 짜고한 거짓계약
·   제48조(지방세심의위원회)제141
조제1항
제5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
<u>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u> 다.
②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